

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9월 16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9월 6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2년 9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임이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상임이사인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도록 하여 재단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책임경영과 전문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확히 함(안 제7조제1항)
-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비롯한 선임직 이사의 임명방식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5항)
- 대표이사의 직무를 신설함(안 제8조제2항)
- 직원의 임면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이사와 관련된 규정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대표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단의 책임 경영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 되었음

2) 주요내용

-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확히 함(안 제7조제1항)
-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비롯한 선임직 이사의 임명방식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5항)
- 대표이사의 직무를 신설함(안 제8조제2항)
- 직원의 임면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
다. 검토의견

- 현 재단 운영의 문제점
 - ▶ 임원의 직무(조례 제8조)
 -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, 이사장은 무보수 비상근자로서 재단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지휘·감독할 수 없는 구조임.
 - 대표이사를 이사장의 보좌역할로 규정하고 있으나, 대표이사는 전문 예술경영인의 상근 근무자로서 실질적으로 재단을 대표하여 기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구분	이사장	대표이사
직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단을 대표하며,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·감독 • 등기상 대표권 소유자 • 이사회 의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사장을 보좌하여, 재단의 업무를 총괄 • 이사회 이사
임명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
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화예술 분야 및 경영분야에 전문성을 겸한 사람
근무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상근, 무보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근, 보수
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년

- ▶ 비상근자 이사장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운영 발생
 - 비상근 이사장으로 인하여 행정 처리 및 주요 결재 상의 부재 등 문제점 발생
- ▶ 위와 같이 재단 운영에 있어 비상근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혼재로 대표권의 불명확성 및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

○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역할 구분

- ▶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은 출자출연기관이 임원과 관련하여,
 - “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(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조에서 같다.)를 둔다...” 라고만 규정하고 있고(제9조1항)
 - 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, 개정안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두고, 이사장에게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지위를, 대표이사에게는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,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.
- 본 개정안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역할을 구분하여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을 명확히 하고 재단 운영에 권한과 책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